|  |  |  |
| --- | --- | --- |
| **자유무역 시범구역의 외상투자 비안 관리방법 (시범행)**  상무부공고2015년제12호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자유무역 시범구역(이하 ‘자무시범구’라 약칭)의 국제화, 법치화, 시장화한 경영환경 구축의 진일보를 위해,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국무원은 ‘자무시범구’의 외상투자 시행에 대한 진입을 허가하기 전 내국민대우를 함에 있어 금지하는 목록을 결정하고자 한다. 외상투자 관리유형에 관한 요구의 개혁을 실시하고자, ‘자무시범구’의 외상투자비안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이에《자유무역 시범구역 외상투자비안 관리방법(시행)》를 공표하며 발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실시한다.  상무부  2015년4월8일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관리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광동) 자유무역 시범구역, 중국(천진) 자유무역 시범구역, 중국 (복건) 자유무역 시범구역, 중국(상해) 자유 무역 시범구역(이하 ‘자무시범구’라 약칭)의 국제화, 법치화, 시장화한 경영환경 구축의 진일보를 위해,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 국무 원의 중국(상해)자유무역 시험구역 임시조정 유관법률법규의 행정심사에 관한 결정》, 《전국인민대상무위원회 국무원의 중국(광동), 중국(천진), 중국(복건)자유무역 시범구역과 중국(상해)자유무역 시범구역 확대의 임시조정 유관법률법규의 행정심사에 관한 결정》, 관련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자가 ‘자무시범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자유무역 시범구역의 외상투자 진입에 관한 특별관리조치(금지 목록)》를 제외한 분야의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이하 투자실시라 통칭함) 및 계약정관의 비안은 본 방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은 별도로 규정하며, 그 규정에 따른다.  투자실시 시간은 외상투자기업 설립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영업집조가 발급되기 까지를 뜻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은 기업의 영업집조 변경 발급과 관련된 경우, 투자실시 시간은 기업의 영업집조 변경 발급 시간을 뜻하며, 기업의 영업집조 변경발급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투자실시 시간은 변경사항의 발생시간을 뜻한다.  **제3조** ‘자무시범구’ 관리기구(이하 비안 기구라 약칭)에서 ‘자무시범구’ 외상투자 사항의 비안관리를 책임진다.  비안기구는 상무부(홍콩, 마카오, 타이완 교민)투자비안 정보시스템(이하 비안시스템 이라 약칭)을 통해, ‘자무시범구’ 외상투자 사항의 비안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는 ‘자무시범구’ 내 기업설립에 투자하고, 본 방법 규정에 속하는 비안 범위일 경우, 외국투자자는 기업명칭 예비심사통지서를 취득하여 투자실시 전 또는 투자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무시범구’ 수리 사이트(이하 수리 사이트라 약칭)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의 설립비안 신청서》(이하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본 방법 규정의 비안 범위에 속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실시 전 또는 투자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 변경비안 신청서》 (이하《변경 신청서》라 약칭)를 작성 후 제출하여 변경비안 수속을 처리한다:  (1) 투자 총액의 변경;  (2) 등록자본금의 변경;  (3) 지분, 합작관계자간의 권리를 변경 또는 양도함;  (4) 지분의 질권 설정;  (5)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  (6) 경영 범위 변경;  (7) 경영 기한 변경;  (8) 사전 종료지;  (9) 출자방식, 출자기한의 변경;  (10) 중외합작기업의 외국합작자의 조기 투자회수;  (11)기업명칭의 변경;  (12)등록주소지의 변경.  그 중,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공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비안 수속을 처리시 법에 의거하여 공고 수속현황을 처리함을 설명해야 한다.  **제6조** 비안관리 대상인 외상투자기업에 심사가 필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외상투자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처리한다.  **제7조** 본 방법 실시 전 이미 ‘자무시범구’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자무시범구’ 외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전입이 본 방법규정에 속하는 비안 범위인 경우 변경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외상(홍콩, 마카오, 타이완 교민) 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 폐기한다.  **제8조**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설립신고서》또는《변경신고서》를 제출 시, 신고내용이 진실, 정확, 유효하며 신고하는 투자사항이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과 부합됨을 승낙한다.  **제9조** 외국투자자 혹은 외상투자기업이 온라인으로《설립신고서》혹은《변경신고서》를 제출한 후, 비안기구는 신고사항에 대해 비안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본 방법규정에 속하는 비안범위일 경우 비안기구는 3일 업무일 이내에 비안을 완료하여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비안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할 것을 통지한다.  **제10조** 비안기구는 즉시 비안시스템에서 비안결과를 발표하고, 수리사이트에서 비안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비안업무 완료통지 수령 후,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비안기구를 통해《외상투자기업 비안증명》 (이하《비안 증명》라 약칭)을 수령한다. 수령 시에는 아래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명칭 예비심사 통지서(사본);  (2) 외국투자자 또는 그의 수권을 받은 대표의 인감이 찍힌《설립신고서》또는 외상 투자기업 혹은 그의 수권을 받은 대표의 인감이 찍힌《변경신고서》;  (3) 외국투자자 및 실질적인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의 자격증명 또는 신분증(사본).  **제12조** ‘자무시범구’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매년 6월 30일 전에 비안시스템에 등록하여,《외상투자기업의 투자경영성과 연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비안기구는 ‘자무시범구’의 외국투 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 법률법규 규정상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비안기구는 신고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임의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부서 또는 사법기관의 건의를 반영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직권을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전개한다.  **제14조** 비안기구의 관리감독 및 검사에 포함되는 내용: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본 방법규정에 따라 비안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외상투자기업이 투자한 경영활동이 신고한 비안정보와의 일치여부; 본 방법규정에 따라 연도보고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외상투자 법률법규 규정의 기타 상황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제15조** 관리감독 및 검사 중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 법률법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비안기구는 서면통지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전개한다.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 존재를 확인한 경우, 그 기한 내 변경하도록 명령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비안기구에서 비안을 취소하고, 관련부문에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제청한다.  **제16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비안, 등기 및 투자경영등 활동 중의 형성된 정보 및 비안기구와 기타주관부문에서 관리감독 및 검사 중 파악한, 신용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상무부외상(홍콩, 마카오, 대만 교민)투자신용 당안시스템에 입력한다.  상무부와 관련부문은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한다. 비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본 방법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안기구는 관련정보를 신용 당안에 기입하고,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공시한다.  신용정보 공유와 공시는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상업기밀, 개인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  **제17조** ‘자무시범구’ 외상투자사항이 국가안전심사, 반독점심사에 연관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외상투자의 투자성회사, 창업투자 기업이 ‘자무시범구’ 내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자무시범구’ 내의 외자합병, 외국투자자의 공시기업에 대한 전략투자,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권 출자,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는 관련 규정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 투자자가 ‘자무시범구’에 투자하여 《자유무역 시범구역 외상투자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 (금지 목록)》이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30일 후에 실시한다.  첨부: 1. ’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비안신고서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07148.doc>  2.’자무시범구’ 외상투자기업의 변경사항 비안신고서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23215.doc>  3. 중국( )자유무역 시범구역 외상 투자 기업 비안증명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36639.doc> |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备案管理办法（试行）**  商务部公告2015年第12号  为进一步扩大对外开放，推进外商投资管理制度改革，在自由贸易试验区（以下称自贸试验区）营造国际化、法治化、市场化的营商环境，经全国人大常委会授权，国务院决定在自贸试验区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的管理模式。为落实改革外商投资管理模式的相关要求，规范自贸试验区外商投资备案管理工作，现公布《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备案管理办法（试行）》，自发布之日起30日后实施。  商务部  2015年4月8日  **第一条** 为进一步扩大对外开放，推进外商投资管理制度改革，在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以下简称自贸试验区）营造国际化、法治化、市场化的营商环境，根据《全国人大常委会关于授权国务院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法律规定的行政审批的决定》、《全国人大常委会关于授权国务院在中国（广东）、中国（天津）、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以及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扩展区域暂时调整有关法律规定的行政审批的决定》、相关法律、行政法规及国务院决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外国投资者在自贸试验区投资《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以外领域，外商投资企业设立、变更（以下统称投资实施）及合同章程备案，适用本办法。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另有规定的，从其规定。  　　投资实施的时间对外商投资企业设立而言，为企业营业执照签发时间；对外商投资企业变更而言，涉及换发企业营业执照的，投资实施时间为企业营业执照换发时间，不涉及换发企业营业执照的，投资实施时间为变更事项发生时间。  **第三条** 自贸试验区管理机构（以下简称备案机构）负责自贸试验区外商投资事项的备案管理。  　　备案机构通过商务部外商（港澳台侨）投资备案信息系统（以下简称备案系统），开展自贸试验区外商投资事项的备案工作。  **第四条** 外国投资者在自贸试验区投资设立企业，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外国投资者在取得企业名称预核准通知书后，可在投资实施前，或投资实施之日起30日内，登录自贸试验区一口受理平台（以下简称受理平台），在线填报和提交《自贸试验区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表》（以下简称《设立申报表》）。  **第五条** 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外商投资企业，发生以下变更事项的，可在投资实施前，或投资实施之日起30日内，在线填报和提交《自贸试验区外商投资企业变更事项备案申报表》）（以下简称《变更申报表》），办理变更备案手续：  　　（一） 投资总额变更；  　　（二） 注册资本变更；  　　（三） 股权、合作权益变更或转让；  　　（四） 股权质押；  　　（五） 合并、分立；  　　（六） 经营范围变更；  　　（七） 经营期限变更；  　　（八） 提前终止；  　　（九） 出资方式、出资期限变更；  　　（十） 中外合作企业外国合作者先行回收投资；  　　（十一）企业名称变更；  　　（十二）注册地址变更。  　　其中，依照相关法律法规规定应当公告的，应当在办理变更备案手续时说明依法办理公告手续情况。  **第六条** 备案管理的外商投资企业发生需审批的变更事项，应按照外商投资管理的相关规定办理审批手续。  **第七条** 自贸试验区内于本办法实施前已设立的外商投资企业发生变更，或自贸试验区外的外商投资企业迁入，且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应办理变更备案手续，并缴销《外商（港澳台侨）投资企业批准证书》。  **第八条** 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在提交《设立申报表》或《变更申报表》时承诺，申报内容真实、完整、有效，申报的投资事项符合相关法律法规的规定。  **第九条** 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在线提交《设立申报表》或《变更申报表》后，备案机构对申报事项是否属于备案范围进行甄别。属于本办法规定的备案范围的，备案机构应在3个工作日内完成备案，通知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不属于备案范围的，通知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按有关规定办理审批手续。  **第十条** 备案机构应即时在备案系统发布备案结果，并向受理平台共享备案结果信息。  **第十一条** 收到备案完成通知后，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可向备案机构领取《外商投资企业备案证明》（以下简称《备案证明》）。领取时需提交以下文件：  （一）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复印件）  （二）外国投资者或其授权代表签章的《设立申报表》，或外商投资企业或其授权代表签章的《变更申报表》；  　　（三）外国投资者、实际控制人主体资格证明或身份证明（复印件）。  **第十二条** 自贸试验区外商投资企业应在每年6月30日前登录备案系统，填报《外商投资企业投资经营情况年度报告表》。  **第十三条** 备案机构对自贸试验区外国投资者及外商投资企业遵守外商投资法律法规规定情况实施监督检查。  备案机构可采取定期抽查、根据举报进行检查、根据有关部门或司法机关的建议和反映进行检查，以及依法定职权启动检查等方式开展监督检查。  **第十四条** 备案机构的监督检查内容包括：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是否按本办法规定履行备案程序；外商投资企业投资经营活动是否与填报的备案信息一致；是否按本办法规定填报年度报告；是否存在违反外商投资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十五条** 经监督检查发现外国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存在违反外商投资法律法规规定的情形的，备案机构应以书面通知责成其说明情况，并依法开展调查。经调查确认存在违法行为的，责令其限期整改；情节严重的，备案机构应取消备案，并提请相关部门依法予以处罚。  **第十六条**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在备案、登记及投资经营等活动中所形成的信息，以及备案机构和其他主管部门在监督检查中掌握的反映其诚信状况的信息，将纳入商务部外商（港澳台侨）投资诚信档案系统。  　　商务部与相关部门共享外国投资者及外商投资企业的诚信信息。对于备案信息不实，或未按本办法规定填报年度报告的，备案机构将把相关信息记入诚信档案，并采取适当方式予以公示。  　　诚信信息共享与公示不得含有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的商业秘密、个人隐私。  **第十七条** 自贸试验区外商投资事项涉及国家安全审查、反垄断审查的，按相关规定办理。  **第十八条** 外商投资的投资性公司、创业投资企业在自贸试验区投资，视同外国投资者，适用本办法。  　　自贸试验区内的外资并购、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外国投资者以其持有的中国境内企业股权出资、外商投资企业境内再投资，应符合相关规定要求。  **第十九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者在自贸试验区投资《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以外领域的，参照本办法办理。  **第二十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30日后实施。  附件：1.自贸试验区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申报表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07148.doc>  　　　2.自贸试验区外商投资企业变更事项备案申报表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23215.doc>  　　　3.中国（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企业备案证明  <http://images.mofcom.gov.cn/wzs/201504/20150420100736639.doc> |